

제329회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0호(부록)

국회사무처

일 시 2014년12월8일(월)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제안설명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인한 피해자의 대학입학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출)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4년 11월 7일 이상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정정 통지에 따른 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2014년 11월 12일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피해자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4.12.3)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4.12.4)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4.12.5)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과목의 출제 오류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구제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해당 피해자의 정원 외 입학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본 대안은 법률 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제명을 구체화하고, 피해자의 정의를 수능시험 성적을 정정한 결과 2014학년도에 지원하였던 대입전형에서 합격할 수 있었던 사람으로 하여 하향지

원자 등을 제외한 직접피해자만이 구제대상임을 명확히 하며, 피해자의 교육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국가의 책무와 피해자의 정원 외 입학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여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피해자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과목의 출제 오류에 따라 성적이 정정된 사람으로서 성적을 정정한 결과 2014학년도에 지원하였던 대학입학전형에서 합격할 수 있었던 사람을 말함(안 제2조).

나. 국가는 피해자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대학의 장은 피해자에 대하여 2015학년도 입학·편입학을 허가하여야 함(안 제3조).

다. 피해자가 제3조에 따라 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봄(안 제5조).

라. 대학의 장은 이 법에 따라 해당 대학에 입학한 학생의 수가 다른 대학에 입학한 학생의 수보다 적은 경우 2016학년도 대입전형에서 그 부족한 수만큼 모집인원을 초과하여 모집할 수 있음(안 제6조).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서울 송파갑 박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들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을 확보하고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8월 6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려면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종합복지급여 등의 지급을 위해서는 회원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률에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공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법안 개정 취지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셔서,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정청래·전병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각각 제출한 4건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하나로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FTA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등이 50%를 초과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법인에 대해서는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 사용사업자가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납품업체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

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이를 통보 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승인 취소, 업무정지, 승인 유효기간 단축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김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각각 제출한 3건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하나로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FTA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등이 50%를 초과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법인에 대해서는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유효기간을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공익채널 편성의무와 방송내용 기록·보존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김정훈 의원·조경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하나로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이 영업을 양도하거나 합병되는 경우 영업을 양수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환수 절차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사업비 환수 처분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이 환수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일정을 국가재정법 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순차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김기선 의원이 두 차례 대표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하나로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의 공무원 의제 규정의 범위를 연구기관 등의 전체 임직원으로 확대함으로써, 부패행위를 방지하고 공공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직무 관련 수사 등의 개시 통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연구기관으로서 공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장하나 의원, 권은희 의원, 강은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하나로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서 일정비율 이상의 하도급을 제한하고,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과도한 다단계 하도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이상민·김영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각각 제출한 2건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하나로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효율적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고에 관한 통계 및 연구실 유해인자 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도록 연구실안전관리 정보화 규정을 신설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여금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대행기관 등록제를 신설하여 체계적인 대행기관 관리를 통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자율적인 연구실 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위하여 안전관리우수연구실 인증 제도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전순옥·김상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하나로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질적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연구개발사업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성과평가 표준지침에 단계적으로 구분되거나, 5년 이상 추진되는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의 추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추적평가가 활성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대구 북구갑 권은희 의원입니다.

정부의 ‘손톱밑 가시’ 추진과제로 선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 등록기준신고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4년 8월 2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정보통신공사업자는 공사업 최초 등록 후 매 3년마다 시·도지사에게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등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행정적·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체로 구성되어 있는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동 개정안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 제도를 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지하되,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실태조사방법을 통해 정보통신공사업체의 등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건전성 확보는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안 제14조제2항·제66조제2호 및 제3호·제66조의2제1항)

또한, 시·도지사 실태조사에 따른 인력부족 등의 현실을 감안하여 등록기준 적합여부 확인 업무 등 단순 업무는 민간에 위탁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안 제69조제2항제1의3 및 제5호)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며, 동

개정안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 제도를 폐지하여, 공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정보통신설비의 시공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법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우주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안

(서상기 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과학기술분야는 날로 새롭게 발달해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문분야 중에서도 항상 새로운 정보와 전달방식을 숙지해야 하고, 이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청소년에 대한 과학교육의 비중을 높여 과학의 대중화에 노력하고 있는 상황임.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우주소년단이 정규교육과정과는 별개로 20여 년간 청소년 과학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학교 내 수학, 과학 활동을 지원하고 기초과학 교육 및 과학문화 확산 활동에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으나, 사립단체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학교 현장에서 실습 위주의 과학활동을 통하여 과학기술 인재의 양성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우주소년단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가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우주소년단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의 제공과 협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우주소년단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유·공유재산, 학교시설 등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우주소년단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한국우주소년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후원회는 회원으로

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물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우주소년단에 대하여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우주소년단에 기부한 금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한국우주소년단지원단체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은 한국우주소년단의 지원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사. 한국우주소년단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예산서와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을 첨부한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한국우주소년단에 대하여 자료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업무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국방위원회 송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동료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군형법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법 제정 당시 군에서는 비밀자료 송·수신의 주요 수단으로 종이 형태의 암호자재를 사용하였으나, 52년이 지난 현재 군에서는 70여 종, 14만여 대에 이르는 암호장비를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군의 암호사용 환경이 암호자재에서 암호장비 중심으로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변화된 암호 환경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그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군 암호사용 환경을 반영하여 용어를 재정립하고, 군 정보통신망에 연결된 암호장비를 권한 없이 연결·해제하거나 해제된 사실을 군 정보통신망 사용자에게 공지하지 않은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군 암호체계의 보안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암호자재에서 암호장비 중심으로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보안성을 높이고 침

해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균형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아무쪼록 군 암호 환경의 보안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개정법률안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형사소송법안

국회의원 전해철입니다.

이상민 위원장님과 여야 위원님께 군형사소송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법안의 취지는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른 군사재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군판사는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임명하고, 재판관은 지휘관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군사법원과 군판사가 지휘관에 소속되고, 재판과정에 법률전문가가 아닌 장교가 재판부에 참여하며, 지휘관이 군사법원의 재판결과에 대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짐에 따라 군사법원이 지휘관에 종속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군검사 역시 당해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에 소속하며, 부대의 장은 소관 군검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군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속관계로 인하여 군사법원 재판부에 재판장으로 참여한 심판관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관할권의 감경권을 남용하거나, 군검찰이 군내 사망사고·부조리 사건에 대한 수사를 충실히 하지 않는다는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사법제도의 개혁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지휘관으로부터 독립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에 군사법원 및 군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사법원법을 폐지하게 됨을 전제로 군사법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형사소송절차를 현행 형사소송법의 체계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보완·정비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군사재판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안을 신중히 검토·심의하신 후 입법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시어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새정치민주연합 익산 갑 출신 이춘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행 군 사법제도상 군사법원은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고 국방부장관이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으로서 재판관을 지정하고 행정사무를 지휘·감독하는 동시에 군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찰관을 지휘·감독하고 있습니다. 군사법원이 군검찰과 함께 해당 부대 지휘관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이 담당하고 있는 군사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현행과 같이 수사권과 재판권이 국방부 소속의 사실상 동일한 관할관의 지휘·감독 하에 있음에 따라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위험이 있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군인들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 소속의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이 아닌 사법부 내 특수법원으로서 고등군사법원과 보통군사법원을 신설하여 일반법관으로 하여금 재판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의 제명을 ‘군형사소송법’으로 변경하고 관할관제도·심판관제도 등을 폐지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사법원법 폐지법률안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여러분!

대전 유성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폐지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사재판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군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장병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래의 군사법원법을 대체하여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 및 군형사소송법이 제정됨에 따라 군사법원법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425)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김광진 의원입니다.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2014년 8월 20일 김광진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한 것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군형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만 재판권을 가지도록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축소하여 군인이 범한 일반 형사범죄의 경우에는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군인의 경우에는 군형법에 규정된 죄뿐만 아니라 일반 형사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법원은 일반법원과 달리 법관이 아닌 장교 중에서 임명되는 심판관이 재판관 중 일부를 구성하기도 하고, 관할관이 판결에 대하여 확인 후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는 등 군사재판의 절차와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로 음주운전, 성범죄 등 일반범죄를 저지른 군인에 대해 군사법원이 일반법원에 비해 가벼운 판결을 내리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군인이 저지른 일반 형사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하도록 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상 말씀드린 동 개정법률안의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제안된 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819)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김광진 의원입니다.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2014년 9월 23일 김광진 의원 등 12인이 공동발의한 것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군사법원의 심판관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헌법상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더욱 보장하고, 부당한 재판관여 등의 문제를 방지해 더욱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심판관 제도는 군사재판 초창기에 법조인 자격을 갖춘 군판사가 부족한 상황과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심판관의 군사적 지식을 활용하여 재판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나 현재는 전체 군사재판 중 심판관의 군사적 지식이 필요한 사건의 수는 미미하며, 심판관을 통하여 심판관 또는 관할관의 의중이 부당하게 재판에 관여할 수 있다는 등의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등 국민으로부터 군사재판의 신뢰성이 크게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심판관을 폐지하고, 헌법상 자격을 갖춘 법관(군판사)만이 재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상 말씀드린 동 개정법률안의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제안된 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 여러분!

대전 유성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사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 소속 하에 고등군사법원과 지역군사법원을 설치하고, 국방부장관이 행사하는 군판사에 대한 인사권의 공

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판사인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전시·사변시의 군사법원의 구성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등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을 현행 군사법원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군사법원의 재판권은 군형법상 각 죄에 대해서만 재판권을 가지도록 하고,

둘째, 고등군사법원 및 지역군사법원의 개편입니다.

현행 보통군사법원은 비상설의 회의체적 성격을 가진 법원으로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운영됨으로써 사건처리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행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사법원을 고등군사법원과 지역군사법원으로 구분하여 국방부 소속으로 일원화하며, 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에 설치하고 지역군사법원은 상설화된 1심 법원으로 5개 지역에 각각 설치하고, 군사법원을 국방부 소속으로 일원화하여 통일된 기준에 따라 각 군의 사건을 처리하게 함으로써 군사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군사법원의 재판관의 구성 및 군판사에 의한 심판권의 폐지입니다.

현행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관제도는 군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반장교들을 재판에 심판관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였으나, 일반장교들이 심판관으로 임명되는 것을 기피하는 등 일련의 문제점으로 합의제 운영이 어렵고 양형에 있어서도 편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군사법원의 재판관을 군판사로만 구성하도록 하고, 심판권은 고등군사법원과 지역군사법원의 군판사 3인으로 구성되는 합의부에서 각각 이행을 하도록 하고, 일반장교들이 재판의 심판관으로 참여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심판권을 각급 군사법원의 합의부에서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군사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넷째, 기존의 관할관제도를 폐지하고, 각급 군사법원장에 의한 사법행정사무의 관장 및 관계직원의 지휘·감독체계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한 관할관제도는 사건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부의 구성과 재판

결과의 확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부대의 지휘관인 관할관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어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 관할관제도를 폐지하고 고등군사법원장이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고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하며, 지역군사법원장이 당해 지역군사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평시의 관할관제도를 폐지하고 각급 군사법원장으로 하여금 사법행정사무와 관계직원의 지휘·감독을 하게 하여 군사재판에 대한 관할관의 개입을 차단함으로써 군사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섯째, 고등군사법원장의 임명절차 및 자격요건을 명확히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사법원의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고등군사법원장의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등군사법원장에 대한 임명절차 및 자격요건 등을 명백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등군사법원장은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현역 군법무관 또는 민간 법조인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없도록 하며, 그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전역 또는 퇴직되도록 하고, 고등군사법원장의 임기 등을 명백히 규정하여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섯째, 군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한 군판사는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에 소속되어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군판사를 임명하도록 하고, 군판사 및 군검찰관을 순환하여 근무하게 함으로써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군판사는 일정한 경력을 가진 군법무관 또는 민간 법조인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고, 군판사의 소속은 국방부로 하고 군판사의 임명 등은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행하도록 하며, 군판사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군판사의 자격요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군판사의 소속을 국방부로 일원화함으로써 군판사의 직무상 독립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곱째, 전시·사변시의 보통군사법원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입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시의 신속한 재판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각 부대별로 군사법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시에는 국방부와 각 부대별로 보통군사법원을 설치하도록 하고, 군사법원의 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관할관을 고등군사법원과 보통군사법원에 두도록 하며, 군판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는 등 전시·사변시의 특례를 규정하고,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시의 재판권 행사에 맞는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수한 상황에 요구되는 재판의 신속한 수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 여러분, 대전 유성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검찰의 중립성을 강화하여 군내의 사건·사고의 처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군내의 법질서를 보다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국방부 소속하에 고등검찰단과 지역검찰단을 설치하고, 국방부장관이 행사하는 군검사에 대한 인사권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검사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군검찰의 조직에 관한 규정을 현행 군사법원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고등검찰단 및 지역검찰단의 축소 설치입니다.

현행 군검찰부는 각 군별로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운영되어 당해 부대장이 소관 군검찰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검찰관을 지휘·감독함으로써 사건처리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 국방부 검찰단, 각 군 본부 고등검찰부

및 사단급 부대의 보통검찰부를 폐지하고 군검찰단을 고등검찰단과 지역검찰단으로 구분하여 국방부 소속으로 일원화하며, 고등검찰단은 국방부에 설치하고, 지역검찰단은 지역군사법원에 대응하여 5개 지역에 설치하도록 하고, 군검찰을 국방부 소속으로 일원화하여 통일된 기준에 따라 각 군의 사건을 처리하게 함으로써 군검찰의 중립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군검찰은 군형법상 각 죄에 대해서만 관할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국방부장관의 군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입니다.

군검찰부가 국방부 소속의 군검찰단으로 통합됨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군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군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군검찰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권을 갖도록 하고,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고등검찰단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한편, 국방부장관은 각 군의 소속원이 피의자인 사건 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의 군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의 행사를 통하여 전 군의 통일된 기준에 따른 적정한 검찰권의 행사를 보장하고, 각 군 참모총장에게 구체적 지휘감독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에 대한 지휘권과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넷째, 군검찰 항고제도의 도입입니다.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고등검찰단장에게 항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군검사가 속하는 지역검찰단을 거쳐 고등검찰단장에게 항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검찰단의 군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불기소처분을 경정하도록 하고, 고소 또는 고발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제도를 인정함으로써 군검찰이 스스로 불기소처분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권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섯째, 고등검찰단장의 임명 등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군검찰사무를 통할하는 고등검찰단장의 업무상 독립성과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등검찰단장에 대한 임명절차 및 자격요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등검찰단장은 10년 이상 법조경력력을 가진 현역 군법무관 또는 민간 법조인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없도록 하며, 그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전역 또는 퇴직되도록 하고, 고등검찰단장의 임기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사건처리의 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섯째, 군검사의 임용·소속·임기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한 검찰관은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임명하고,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에 소속되어 당해 부대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검찰관의 직책을 보직의 개념으로 운영함으로써 직무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군판사에 대응되는 용어로 전환하기 위하여 검찰관을 군검사로 하고, 군검사는 일정한 경력력을 가진 군법무관 또는 민간 법조인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고, 군검사의 소속은 국방부로 하며, 군검사의 임명 등은 군검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행하도록 하고, 군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군검사의 자격요건 등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군검사의 소속을 국방부로 일원화함으로써 군검사의 직무상 독립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곱째, 전시·사변시의 군검찰부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를 두고자 합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시에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각 부대별로 군검찰부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시에는 국방부와 각 군 본부에 고등검찰부를 설치하고 각 부대별로 보통검찰부를 설치하여 군검찰부 체제로 전환하도록 하며, 군검사는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이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군검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는 등 전시·사변시의 특례를 규정하고,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시의 검찰

권 행사에 맞는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수한 상황에 요구되는 신속한 사건처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 여러분!

대전 유성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교도소를 국방부장관 소속의 국군교도소로 개편하고 군구치소를 신설하는 한편, 기존 미결수용실을 군유치장으로 개편하여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행형조직을 체계화하는 등 군행형제도의 전문성 및 군수용자의 인권을 확대·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존 군교도소를 국군교도소로 개편 설치하는 것입니다.

현재 군교도소는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두도록 되어 있으나 육군 직할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고, 군수사기관(헌병)의 수사장소인 헌병대 영창이 군미결수용자의 수용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어 인권 및 재판과정에서의 방어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려는 것이며, 군교도소를 국군교도소로 개편하고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군미결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한 군구치소를 신설하며, 국군교도소와 군구치소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부여하도록 하고, 군수사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군교정기관을 설치함으로써 군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일관성 있고 전문적인 교정체계를 확립하여 교정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가석방심사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존경하는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방위원회 황진하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박명재 의원 및 정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보호구역 안에서 주택 외의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됨을 명확히 하였고,

둘째, 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국방부장관 등과의 협의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셋째, 비행안전구역상 군용항공기 등의 이·착륙 및 비행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관할부대장과 협의 하에 기존 도로를 확장 또는 이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김우남 의원, 김성찬 의원, 정청래 의원, 손인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이상 5건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들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하나로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임기 종료로 전역되는 해병대사령관에게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병에게도 소청제기권을 부여하였으며,

셋째, 예비장교후보생제도와 장려금제도의 법적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하려는 것입니다.

김광진 의원, 진성준 의원, 송영근 의원, 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들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예술·체육요원이 복무기간 중 재능을 활용한 봉사활동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둘째, 공중보건 의사·공익법무관 등이 해당분

야 미중사 등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경우 이들을 현역병 등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등을 결정할 때, 학력과 출신학교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였고,

넷째,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장이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기존의 군용항공기는 국외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만 감항인증을 할 수 있었으나 국내 개발 민간유·무인항공기의 군 사용 수요가 발생하면서 민간에서 개발되었으나 군용항공기로 국내에서 구매하는 사업의 비행안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생겼다.

이에 군용항공기를 국내에서 구매하는 경우 또한 감항인증 대상사업으로 포함하여 국내 항공산업을 육성하고,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권한을 실무위원회에 일부 위임하여 감항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군용항공기를 국외뿐 아니라 국내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도 감항인증을 할 수 있도록 감항인증 대상사업 확대(안 제2조제4호나목).

나. 감항인증심의회의 심의·조정 권한을 실무위원회에 일부 위임하여 위원회의 운영 효율화(안 제7조제2항).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홍준 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군 내부의 성추행·폭행 사건 및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자살 및 총기난사 사건 등이 발생하고 있어 군의 사기가 저하되고 국방 임무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군 내 인권침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내고 그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

하여, 한국국방연구원의 사업으로서 군 내 인권 침해 방지 및 군인의 인권보호 관련 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대안을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군 내 인권침해를 예방·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통해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호 신설).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송영근 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오늘날의 국제환경은 국경·인종·영토분쟁 등 다양한 분쟁으로 안보적 관점에 대한 시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이러한 분쟁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을 비롯한 개별 국가들의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국제적 위상의 증대에 따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적 분쟁 해결을 위한 평화활동은 물론 군사적 교류 및 교육·훈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군의 파견 등 국제적 평화활동의 일환으로 다양한 형태의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는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중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관하여서만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을 통해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에 국제평화 유지를 위한 다국적군 파견, 국방교류협력을 위한 파견 등의 해외파견활동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한 법적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국군의 해외파견에 관한 내용과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국군부대의 파견을 위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조사단을 파견하여 현지 정세, 안전 상황 등 현지의 전반적인 여건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조).

나. 정부가 해외파견활동 참여를 위하여 국군부대를 해외에 파견하려면 미리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함(안 제6조).

다. 정부가 파견부대의 파견기간을 연장하려면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함(안 제8조).

라. 정부는 매년 정기국회에 파견부대의 구체적인 활동성과, 활동상황, 임무 종료 및 철수 등

변동사항을 보고하도록 함(안 제11조).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예비군대원에 대하여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소집 동원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면서 국회의원 등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동원 및 훈련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이란 이유만으로 예비군 동원 및 훈련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특권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자격에 비추어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국회의원으로서 국가비상사태 시 전시 법률의 제·개정 및 예산 심의 등 국회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여 동원을 보류할 수 있는 것은 합당하나 평상시 예비군 훈련을 받는 것은 사회지도층으로서 솔선수범하는 것으로 다른 예비군대원의 훈련 참석률을 높이고 국가 수호의지를 고양할 수 있으므로, 예비군대원인 국회의원에게도 예비군소집 훈련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단서 신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존경하는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정무위원회에서 제안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김용태 의원, 김재경 의원, 이종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위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비하여 위법성의 정도는 낮으나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그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불공정거래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실시한 회사에 한정하여 중립적 의결권행사제(Shadow voting)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감사선임 등을 위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도록 경과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퇴직자 상당통보의 대상이 되는 임직원 에 대한 조치를 모든 제재조치로 확대함으로써 임직원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존경하는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기획재정위원장 정희수입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주승용 의원, 민현주 의원, 이낙연 의원, 이현재 의원, 최재천 의원, 강동원 의원, 김재윤 의원, 김현미 의원, 김태원 의원, 홍종학 의원(2014.11.3. 발의, 2014.11.4. 발의)이 각각 대표 발의한 11건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 되, 나머지 10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설치를 별표에 반영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보고시기를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 30일 전으로 하며,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도 예비비 개산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각 중앙관서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국민에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예산 이·전용의 요건과 한계를 법률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법률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존경하는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기획재정위원장 정희수입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윤명희 의원, 강석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례의 요건을 정비하고 국유재산특례의 존속 기간을 해당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률명의 개정, 특례 조문의 이동 등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별표 규정을 일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법률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존경하는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기획재정위원장 정희수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전순옥 의원, 김우남 의원, 김기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시행령에 근거가 있는 협동조합 정책심의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하고, 협동조합사업의 비조합원 이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대한 경과조치를 사업자에 한하여 1년 더 연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법률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는 계약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이나 자문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면서, 위원회 위원 중 계약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민간위원을 두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중 민간위원의 경우 계약관련 업무수행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여도 뇌물죄 적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현행 법령에 따른 계약관련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민간위원의 책임의식과 청렴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5조 신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부천 원미을 설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입인지를 구매한 후 프린터로 출력하여 과세대상 종이문서에 첨부하는 전자수입인지 제도가 2013년부터 도입되어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도급·위임 계약과 같이 실제 수입인지를 이용하는 업무에서는 업무 편의성과 입찰 제안 시 가산점 등의 부가적 혜택, 그리고 정부의 페이퍼리스(Paperless) 추진과 같은 정책적 요인 등으로 인해 전자문서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종이로 출력하여 첨부하는 현재와 같은 형태의 전자수입인지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전자수입인지 정의 규정을 보완하여 과세문서가 전자문서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도입하고,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판매방식을 구체화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법안 개정 취지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셔서,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과정

에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이재 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달청은 원자재 과동 등과 같은 비상상황 대비 및 원활한 원자재 수급조절 등을 위하여 품목별 비축 목표량을 바탕으로 비축물자를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원자재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수급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비축 목표량을 재설정하고 중장기 비축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자유무역협정 체결 확대 등으로 각 국 공공조달시장의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조달시장에 외국산 물자의 진입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므로 조달청이 중앙조달기관으로서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공급하는 조달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주요 원자재 및 조달물자의 수출입 현황에 대한 정확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중장기 비축계획을 세우고, 조달 물자의 적정가격을 조사하여 국가 예산을 절감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현황을 파악하여 지원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현행 관세법상 과세정보의 비밀유지의무 규정에 따라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 물품의 거래정보 관련 기초자료의 확보가 힘든 실정임.

이에 조달청장은 조달사업 운영 등을 위하여 수출입 물품의 거래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세관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조달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7 신설).

농어업인 안전 보험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장 제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장 제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장 제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출)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출)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출)

존경하는 이상민 법제사법위원회장 및 법제사법위원 여러분!

농어업인 안전 보험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안(대안) 등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농어업인 안전 보험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첫째,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 근로자의 부상, 질병, 육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사망을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인안전보험과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둘째, 농협생명보험 등 민간보험사와 수협중앙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하여 안전보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도록 지원비율을 명문화하고, 영세농을 위해 경영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보험금의 종류는 상해·질병 치료급여금, 휴업·장해·간병급여금, 장례비, 유족·직업재활·행방불명급여금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전국적인 농어촌용수 수질측정망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서비스·안전기준 준수 등 준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첫째,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농어업법인은 지자체장에게

설립사실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지자체장은 농어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등을 취하도록 하였으며, 지자체장의 법인의 해산 청구 요건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둘째, 농어업경영체의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영농·영여조합법인을 주식회사 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의 책임도 유한책임으로 전환하였으며, 조합법인의 합병·분할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최근 국회 결산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보조사업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조금 재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 시 동 재산이 보조금의 지원을 통하여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병기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다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첫째,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하는 사업 중 조합을 위한 구매·판매사업, 자금지원 등에 대하여 당해 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와 부당지원행위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둘째, 중앙회 '경제사업'의 원활한 이관을 위하여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조공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등에는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합병이 진행 중인 조합이 동시선거를 통해 조합장 임기가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동시선거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합병·신규설립된 조합의 선거일을 동시선거일과 일치시키기 위해 차기조합장 임기를 조정하는 등 조합 동시선거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양곡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양곡가공업자 등은 국산 쌀과 수입쌀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가 다른 쌀을 혼합하여 유통·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영업정지 등의 행정적 제재수단과 행정형벌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원양산업종사자, 국제수산기구, 보존관리조치 등의 용어를 정의 규정하고,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중 읍서버, 항만국 검색관의 업무방해 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재분류하고 준수사항을 국제규범에 맞도록 개선하며, 조업 감시·통제 공무원 및 항만국 검색 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

무를 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여객운송 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해 해양사고 등을 일으킨 경우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영구적 결격사유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운항관리자의 선임주체를 한국해운조합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전환하며, 운항관리규정 작성·심사 및 점검체계를 보완하는 등 안전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하는 등 안전관리시스템 전반을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면허기준 중 수송수요기준 폐지와 해양수산부장관의 연안여객선 현대화계획 수립·시행,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이 부정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의 마련 등도 신설 또는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선장의 출항 전의 검사 강화 및 직접 조종 지휘구간의 확대, 해원에 대한 인명구조 조치 의무의 명확화 등 선장과 해원의 의무를 확대하는 한편 선박 위험시나 충돌 시 등에 인명 구조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선장 등에 대한 처벌수준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여객선에 안전관리 전담승무원을 승무시키고, 비상대비훈련을 내실화하도록 하며, 여객선 선장의 적성 심사기준 강화와 함께 선원복지와 인력수급 및 선원교육훈련을 포함한 선원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선박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복원성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선박의 길이·너비·깊이·용도의 변경 또는 설비의 개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화물 고박 불량, 선박의 임의 변경·개조 및 복원성 유지 의무 미이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벌칙규정을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법률안들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재 시행 중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 2009. 6. 9, 시행 2009. 12. 10)은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마리나 항만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들은 두고 있으나, 마리나항만 이용자에게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리나업의 근거나 관련 산업의 육성 기반 조성에 관한 규정들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따라 선진 마리나국가에서 도입·시행하고 있는 마리나업의 법적 근거 및 사업 영위와 관련된 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마리나 항만 이용자의 편의 증대와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및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필요가 있음.

또한 마리나항만 및 마리나 관련 산업에 대한 조사·연구·홍보, 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할 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마리나 관련 산업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마리나업”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사업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5호).

나. 마리나선박 대여업 및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을 정의하고 등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의2).

다. 마리나업 등록사업자의 권리·의무의 승계,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요건과 절차, 등록 취소의 사유, 금지행위 등 건전한 사업 영위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의3에서 제28조의8까지).

라. 마리나선박 이용자와 마리나업 종사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및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함(안 제28조의9).

마.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및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자가 선박 또는 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유자 및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8조의 10).

바. 마리나선박 제조업자 고유식별코드 부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의 11).

사. 마리나 관련 산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보 공동활용 촉진 등을 수행할 한국마리나협회

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의 12).

아. 마리아항만 및 마리아 관련 산업에서 종사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마리아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 13).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철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김상훈 의원, 김태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3건의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품의 시험결과 자료를 위조하여 납품하는 등 시험성적서가 제대로 보관 및 관리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여 현행법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은 기록의 중요도에 따라 해당 시험·검사의 신청 및 평가 등에 관련된 기록을 4년 이상 보관하도록 기록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상품 등의 인증과 관련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인증 시험결과 등을 상호 인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위원회 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철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의원과 주영순 의원, 홍지만 의원, 이정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업단지의 산업시설 구역 등에서 비제조업의 경우, 업종별 특성이나 안전 및 환경보전상 위해 발생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기준건축면적률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업종별 특성과 안전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의 융복합화 및 첨단화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업·연구개발(R&D)·교육·문화·복지 및 편의시설 등이 하나의 용지에 함께 입주할 필요가 있으므로, 산업시설·지원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복합입주가 가능한 복합구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용도별 구역 변경으로 인해 지가상승시 기부대상이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및 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기업의 공장 증설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가상승분으로 확대하고자 하며, 산업시설구역 등의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계약기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3년 10월 28일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2013.12.10)에, 2013년 11월 13일 김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2013.12.10)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 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률안 소위원회(2014.11.20)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함.

다.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2014.12.2)에서 법률안 소위원회가 심사보

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교육공무원 등의 안정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총 휴직기간은 현행과 같이 6년으로 유지하되 최초 휴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폐지된 증권거래법의 인용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교육공무원 등의 최초 휴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안 제16조제2항).

나. 폐지된 증권거래법의 인용 규정을 정비함(안 제16조의3).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4년 5월 8일 심학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거점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2014. 11. 13)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14년 11월 11일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거점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법률안소위원회로 바로 회부(2014. 11. 13)함.

다.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소위원회(2014. 11. 17) 및 제4차 법률안소위원회(2014. 11. 24)에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였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함.

라.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2014.12.2)에서 법률안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산업단지는 국가산업과 지역경제의 중심지로서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경제의 고속성장을 견인하였으며, 현재 1천 개가 넘는 산업단지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산업단지의 노후화로 인하여 산업단지가 예전과 같은 경제성장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산업의 성장

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였던 지역별 주요 거점산업단지는 대부분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하면서, 열악한 인프라와 단지 내 혁신생태계 발전 미흡, 입주기업 경쟁력 부족 및 근로자 정주여건 악화 등 노후화로 인한 문제에 본격적으로 직면하고 있음.

현재 노후산업단지 지원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조고도화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정부의 지원 정책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개별·분산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산업단지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단지 전반에 대한 범정부적인 지원 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나 현행 지원 정책 및 사업 하에서는 이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임.

이에 노후 산업단지 중 국가 및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산업단지를 ‘노후거점산업단지’로 선정, 기반시설 지원 및 혁신생태계 조성 및 입주기업·근로자 환경 개선 등을 위한 경쟁력강화 사업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고자 함. 이를 통해 해당 산업단지들에 지역별 인재 및 우수기업들의 유입을 촉진하여 성장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조속히 회복하도록 하는 한편,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 제고를 바탕으로 지역산업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강화에 대한 공공의 역할 및 지원강화를 통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둠(안 제5조).

다. 전략계획수립권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추진에 관한 10년 단위의 전략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9조).

라.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노후거점산업단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된 단지의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사업계획 승인 시 사업계획의 내용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또는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안 제13조).

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등을 사업시행자로 함(안 제14조).

사. 사업시행자는 경쟁력강화사업의 원활한 사업비 조달·집행 등을 위하여 별도의 사업계정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여 사업계정의 운용 실태 및 계획 등을 보고하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금융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22조).

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경쟁력강화사업지구에서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및 입주시설, 공장 부대시설의 개념을 사업계획에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한도 내에서 관할 시도의 조례에도 불구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철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이한성 의원과 최재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3건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천연가스수출입업 조건부 등록의 취소에 관한 규정과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의 일정기간 이내 사업개시 의무조항을 삭제하였고,

둘째, 한국가스공사가 체결하려는 천연가스 수입계약·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의 물량 및 기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는 대신 사후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한 증축·개축 등의 공사 시 공사시행자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 시작 7일 전까지 공사계획을 통보하도록 하고, 공사시행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배관 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넷째, 가스사용자의 도시가스배관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4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 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철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정수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안과 김제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건설·운영에 관한 관리·감독법안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이 원자력발전소의 건전하고 투명한 건설·운영을 위하여 물품구매와 계약체결, 조직·인사관리 및 원자력발전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원자력발전공공기관 임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퇴직 후 3년간 관련업체로의 취업을 제한하였으며,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정한 특혜를 주지 않을 것을 규정하였습니

다.

셋째, 원자력발전사업자의 협력업체가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 거짓으로 원전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여 이용하는 행위, 물품의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업체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과 등록취소·입찰제한 조치를 부과하는 한편, 해당 임직원은 위반행위에 따라 5년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산업부장관에게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의무준수여부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되, 관리·감독에 필요한 계획이나 점검결과 등에 대하여는 이를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철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홍일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홍일표 의원안의 내용을 위원회안에 반영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정부제출안의 일부 내용을 포함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자유구역 내 단지 등과 관련한 계획이 수립·변경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도 변경된 것으로 의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발사업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시 국가·공공기관 등 기존 적격자들의 필요적 출자비율을 현행 100%에서 70%로 완화하여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시행자의 부실 위험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시·도지사가 수행하는 폐기물·하

수도 관리 등의 업무를 기존 업무 주체인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환원하는 등 경제자유구역의 운영 등과 관련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위원회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3년 5월 9일 김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이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3. 6. 17.)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4년 3월 28일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제3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4. 4. 11.)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4. 11. 17.)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보건복지위원회(2014. 12. 4.)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늘어나는 복지예산과 서비스의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복지전달체계가 중앙행정기관별·지방자치단체별로 분절 운영되어 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를 기대하기 어렵고, 동일 대상자에게 복지혜택이 중복하여 제공되거나 2월 26일 송파구에서 생활고를 비판한 세 모녀가 동반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도움이 절실한 계층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음.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포괄하는 사회서비스 개념을 도입하여 국민의 보편적·생애주기적인 특성에 맞게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을 지향하

고 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방안과 절차가 미비하여 적절한 조사와 지급 이후의 사후관리의 미흡으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옴.

또한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사업 중심의 서비스 이용 절차와 운영에 한정되어 있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지역단위 사회보장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할 후속조치가 절실히 요구됨.

이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조사, 결정·지급, 사후관리에 이르는 복지대상자 선정과 지원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소외계층을 발굴하기 위한 신고의무, 보호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의 직권신청, 보호계획 수립·지원, 상담·안내·의뢰 등 수급권자 보호를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 간 정보의 연계를 통해 복지행정 업무를 전자적으로 지원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함으로써 복지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통일성을 기해 지역 단위의 종합적 사회보장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 및 지원체계를 정립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회보장급여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제도를 통해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하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2조, 제3조).

나. 급여의 신청, 수급자격의 조사, 급여의 결정·제공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을 위한 기본적 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다.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위하여 업무담당자가 직권으로 필요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타 급여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

우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권자의 보호를 강화함(안 제5조제2항, 제15조).

라.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에 노력하여야 하고, 관계기관 및 단체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단전가구, 보험료체납가구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마.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할 때 신고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지원대상자 발굴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제14조).

바. 지원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에 관한 상담·안내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시 해당기관으로 의뢰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보장기관의 장이 전화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사. 수급자격의 결정 등 보장기관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절차를 명문화함(안 제17조).

아. 사회보장급여 제공 이후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급여의 적정성 확인 조사, 급여의 변경·중지 및 환수 등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자. 사회보장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의 범위, 정보의 표준화, 시스템 이용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 전담기구로 사회보장정보원을 두는 한편, 사회보장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며 시스템 이용에 관한 기관 간 협의·조정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시스템의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 규정함(안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

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사회보장 관련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보호대책 수립·시행, 정보 침해행위 금지 및 시정요구, 시스템 복구조치, 정보의 파기, 비밀유지의무 등을 규정하는 한편, 보호 규정 위반시 고발·징계 요구, 과태료와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제49조,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카. 주민에게 다양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

계획과 연계된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해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의식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다.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및 관련 기관·단체와 연계를 강화하고 사회보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와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는 한편, 읍·면·동 단위로 복지위원을 위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에 사회보장 사무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보장의 원활한 운영체계를 마련함(안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파.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배분 등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특정 분야의 복지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간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함(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접수, 자격조사 및 사후관리 등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 중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 등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이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함(안 제51조, 제52조).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3건의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발 의 자	의안번호	발의일(회부일)	상 정 일
최동익 의원 등 14인	6353	2013. 8. 13. (2013. 8. 14.)	제3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14. 2. 13.
김한길 의원 외 129인	9915	2014. 3. 28. (2014. 3. 31.)	제3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2014. 4. 11.
김현숙 의원 등 15인	10117	2014. 4. 8. (2014. 4. 9.)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 2014. 11. 10.

나.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4. 11. 17.)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보건복지위원회(2014. 12. 4.)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빈곤위기가정의 잇따른 자살사건 발생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긴급지원제도의 개선 및 지원대상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임. 친지·이웃 등을 통한 사적안전망의 붕괴로 정부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으나, 부실한 사회안전망으로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되지 못하여 이들이 자살이

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내모는 것임.

이에 ‘신청’과 ‘선별’을 통한 소극적 복지에서 벗어나,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복지제도에 다가올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따라서 긴급지원 여부를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할 수 있도록 범위의 확대, 안내 강화, 정기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 및 운영실태 점검,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등 긴급지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찾아가는 복지를 통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편,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만이 입금되는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긴급지원수급계좌)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입금하도록 하고, 긴급지원수급계좌의 긴급지원

금과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에 대한 압류를 방지하고 긴급지원대상자의 생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긴급복지지원 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상황별 사유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을 확대함(안 제2조제6호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복지지원의 대상과 기준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다.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장애인활동지원종사자 등을 포함함(안 제7조제3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라. 국가 및 지자체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개선방안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마.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신속한 선지

원을 위하여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우선 필요한 지원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단서 신설).

바.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만이 입금되는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긴급지원수급계좌)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입금하도록 하고, 긴급지원수급계좌의 긴급지원금과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함(안 제9조의2 및 제18조제2항 신설).

사. 긴급지원 중 교육지원의 횟수를 총 2회에서 4회로 완화함(안 제10조제3항 후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2건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발 의 자	의안번호	발의일(회부일)	상 정 일
유재중 의원 등 10인	5113	2013. 5. 24. (2013. 5. 27.)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13. 6. 17.
오제세 의원 등 11인	7846	2013. 11. 18. (2013. 11. 19.)	제3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14. 2. 13.

나.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4. 11. 17.)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보건복지위원회(2014. 12. 4.)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2000년 10월 종합적인 빈곤대책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시행된 이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계를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완화하고 자립을 지원해 왔으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는 각종 급여가 지급되는 반면, 탈수급의 경우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현행 제도의 한계로 인하여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하지 못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탈수급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일할수록 유리한 급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탈수급 유인을 촉진하고 빈곤예방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하여 최저보장수준과 기준 중위소득을 정의함(안 제2조제6호

및 제11호 신설).

나. 급여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행정기관의 장이 급여의 기준을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다. 급여의 기준 및 지급 등 개별 급여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라. 급여체개 개편에 따라 수급권자의 범위는 급여의 종류별로 별도로 규정하게 되므로 현행 수급권자의 범위는 삭제하되, 특례 규정인 제2항은 별도의 조로 신설함(안 제5조 삭제 및 제14조의2 신설).

마.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6조).

바.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의 산정 방식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사.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되,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고,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8조).

아.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8조의2 신설).

자.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로 급여의 운영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급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처의 법률에 규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

차.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하고,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되, 교육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함(안 제12조).

카. 교육급여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12조제1항의 교육급여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지원과 연계·통합을 위하여 부

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함(안 제12조의2 신설).

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되,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함(안 제12조의3 신설).

파. 자활센터의 사회적 경제 연계 강화를 위해 사업 수행기관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추가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3 및 제16조).

하.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5 신설).

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실태조사 및 급여별 누락·중복 및 차상의 계층의 지원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정수를 16명으로 확대함(안 제20조).

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토대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급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기관에 위탁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20조의2 신설).

더. 이 법에 따른 보장시설의 종류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2조).

러.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와 관련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의신청을 검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검토결과를 송부하되, 소관부처의 급여에 한정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인 등에게 이의신청 결정 결과를 직접 통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및 제41조).

며.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안 제49조).